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96호 2019. 11. 2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45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973호 신조,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984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 7
- 삼척시 공고 제99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2
- 삼척시 공고 제99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5
- 삼척시 공고 제100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8

공 람										
--------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 - 145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22.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2048-23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1.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33-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2048-23	20191122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2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09-31 (증산동)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09-33 (증산동)	20191122	건물군 분할	20090626	해당구간내 공원명칭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36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양리길 384-28	20191122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명 (동막리마을명)사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9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96	20191122	부여오류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개	계	개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33-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2048-23	4건		20191122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분할	2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09-31 (중산동)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09-33 (중산동)		20191122	건물군분할	20090626	해당구간내공원명칭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마리 136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양리길 384-28		20191122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명(동마리마을명)사용		
변경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9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96		20191122	부여오류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19-973호

신조,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삼척시장

- 등록 사유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하장면·정라동 민원실 통합인증기 교체
- 등록 연월일 : 2019. 11. 15.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인	2.0cm * 2.0cm (정방형)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출납인	1.8cm * 1.8cm (정방형)			
재등록 공인	삼척시장인 (건축물관리 민원실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통합인증기교체	
	정라동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하장면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장인 (건축물관리 민원실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통합인증기교체	
	정라동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하장면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삼척시 공고 제2019 - 984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삼척에서 시행하는 삼척(도계) 도시계획도로(소로3-32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2일

삼척시장

1.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2. 사업명 : 삼척(도계) 도시계획도로(소로3-32호선) 개설공사
3. 사업개요
 - 가. 위치 : 강원도 도계읍 도계리 일원
 - 나. 사업내용 : 도로개설 L=130.0m, B=6.0m
4. 토지출입 및 보상대상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9. 11. 22. ~ 2019. 12. 6.(14일간)
6. 열람장소
 - 삼척시 도시과 도시개발팀 (☎ 033-570-3449)

7. 이의신청

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상시기

가. 열람·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감정평가 후 보상대상자 선정 개별 통지

※ 보상시기는 보상예산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 계약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절차 : 물건소유자와 협의 계약하되, 협의불응 시 수용재결 신청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나.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함.

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 도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		소유자		서명 (날인)	전화번호	평가업자
	지번	면적(m ²)	주소	성명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도시과 (☎ 033-570-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또는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관계인)	
대상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 요지 및 이유		

삼척(도계)도시계획도로(소로3-32호선)개설사업」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연 락 처 :

삼척시장 귀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 사업명 : 삼척(도계)도시계획도로(소로3-32호선) 개설공사

1) 토지조서

순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도계읍 도계리	247-2	대	76	1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4-1 협동아파트 3-10*	정*영				
2		도계읍 도계리	244-5	대	17	6	삼척시 도계읍 도계3리 1*	장*운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주민생활지 원과-10212)	압류	
3		도계읍 도계리	244-3	대	53	13	삼척시 도계읍 도계3리 1*	장*운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주민생활지 원과-10212)	압류	
4		도계읍 도계리	244-2	대	17	3	삼척시 도계읍 도계3리 1*	남*연				
5		도계읍 도계리	247-8	대	564	2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6		도계읍 도계리	244-1	대	9,451	3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7		도계읍 도계리	413-3	도	116	52	세종특별자치시 도솔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		도계읍 도계리	247-9	도	62	1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				
9		도계읍 도계리	247-12	도	740	10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				
10		도계읍 도계리	244-8	도	136	112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				
합 계					11,232	881						

2) 물건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도계읍 도계리	244-1	웬스	H=18m	60.3	m	서울시 용동포구 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 사				
2	도계읍 도계리	247-3	주택	블록,샌드위치 판넬(스레트지 붕)	190.15	m ²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김*주				
			지붕1	양철기와	220.02	m ²						
			지붕2	슬레이트	220.02	m ²						
			담장	목조	6.56	m ²						
			담장지붕	슬레이트	7.74	m ²						
			블럭담장	H=1.6m, T=100	17	m						
			건물기초	콘크리트 T=200	265.89	m ²						
			바닥포장	보도블럭	10.38	m ²						
			장독대	h=0.5m	3.74	m ²						
			웬스	H=1.4m	22.5	m						

삼척시 공고 제2019-99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11.20. ~ 2019.12.04.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12.05.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홍옥○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 243-1	
	목조/스레이트 (1층:20.25㎡)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20.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 | |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락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9-99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9.11.20. ~ 2019.12.04.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19.12.05.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역○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156-16
		목조/초가 (1층:30㎡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20.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 | |
|----|---|
| 비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9-100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11.21. ~ 2019.12.05.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12.06.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대○
	주소 (대상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346 목조/스레트 (1층:47.6㎡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21.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